

경기경제자유구역 모빌리티-바이오 첨단화 지원사업

KOTITI시험연구원에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「경기경제자유구역 모빌리티-바이오 첨단화 지원사업」의 일환으로,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모빌리티 및 바이오 분야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‘시험분석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’을 시행합니다.

모빌리티 및 바이오 분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4월 25일
KOTITI시험연구원장

1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경기경제자유구역 모빌리티-바이오 첨단화 지원사업
- 단위사업 : 시험분석 및 인증획득 지원
- 담당기관 : KOTITI시험연구원
- 지원규모 : (미래모빌리티) 15,000,000원 × 5개사
(바이오) 5,000,000원 × 5개사
* 기 지원된 입주기업의 성장성 등이 인정될 경우 잔여예산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(기업당 한도금액 초과 지원 가능)

- 지원대상 : 경제자유구역 내 중소·중견 입주기업(입주 예정기업 포함)

부문	세부 사항
미래모빌리티	○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·중견기업 중 ① 미래모빌리티 관련 사업 영위 기업 및 ② 미래모빌리티 전환 희망 기업 또는 준비 중인 기업 ※ (미래모빌리티 전환 희망 기업) 기존 내연기관 완성차 부품 사업을 영위 중이나 미래모빌리티 부품 기업으로 전환 희망, 미래모빌리티 관련 부품 기술 개발,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기업
바이오	○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바이오 산업 관련 중소·중견기업 ※ (바이오 산업) 식품, 화장품, 의약품 등 영위 기업

② 지원사업 세부내용

-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2025.09.30.까지
- 지원내용 : 총소요비용(공급가액 기준)의 80% 이내 지원(기업부담 20%)

분 야	중분류	소분류	지원한도
시험분석/인 증획득	시험분석	○ (미래모빌리티) 관련 부품 등의 시험분석 비용	15,000천원
		○ (바이오) 관련 원료 및 생산품의 시험분석 비용 ○ (바이오) 원료 및 생산품의 임상/비임상 시험 비용	5,000천원
	인증획득	○ 국내외 미래모빌리티 관련 인증(제품/품질 등)	15,000천원
		○ 국내외 바이오 관련 인증(제품/품질 등)	5,000천원

* 시험분석 및 인증획득은 공인된 기관(출연연, 대학 등)에서 진행된 사항만 인정

* [붙임] KOTITI시험연구원 주요 장비 목록 확인

* 장비 및 시험 문의 : (모빌리티) KOTITI시험연구원 조진협팀장(T.02-3451-7324)
(바이오) KOTITI시험연구원 김해성팀장(T.02-3451-7096)

- 지원절차 : 기업이 소요비용 선 집행 후, 증빙 제출완료 시 지원금 지급
- 선정 및 협약 이후 집행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승인된 항목에 대한 집행 증빙서류 제출시 해당 기업 계좌로 입금(사후지급)

※ 승인 이전에 진행되거나 집행된 사항(비용 등)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함

- 세부 절차



* 1차 선정 후 잔여 예산에 따라 2차 사업 공고는 없을 수 있음

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☐ 공고기간 : 2025. 04. 25(금) ~ 2025. 05. 30(금)
- ☐ 신청 및 접수기간 : 2025. 04. 25(금) ~ 2025. 05. 30(금) 18:00
- ☐ 교 부 처 : KOTITI시험연구원 홈페이지
(<http://www.kotiti-global.com/ko/index.do>)
- ☐ 제출방법
 - 제출 서류(pdf)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(chajh@kr.kotiti-global.com)
 - 첨부파일명 : 지원기업명_시험인증지원
 - * (예시) 하나정밀_시험인증지원
 - * 선정 시 제출 서류 원본 제출

☐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사업신청서	서식 1
2	품목 확인서	서식 2
3	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서식 3
4	기업의 범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인서	서식 4
5	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-
6	국세/지방세 납입증명서	-
7	중소기업(중견기업) 확인서	-

4 문의처

- ☐ 문의처
 - 신청 서류, 지원 절차 등 일반행정
 - : KOTITI시험연구원 첨단융합산업본부 산업융합연구팀 02-6191-6083
 - 시험분석 및 인증 관련
 - : (모빌리티) KOTITI시험연구원 조진협팀장(T.02-3451-7324)
 - (바이오) KOTITI시험연구원 김해성팀장(T.02-3451-7096)

5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

□ 사전 검토 : 제출서류 기반으로 자격요건, 누락사항 등 검토

* 서류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
□ 선정평가(서면평가)

-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신청서 및 품목
확인서 평가 후 60점 이상 기업 대상 지원 분야별 평점 상위부터 선정

* 2차 선정은 1차 선정 후 잔여 예산에 맞춘 규모로 진행되며 사업예산에 따라 진
행되지 않을 수 있음

□ 평가기준

평가항목	평가지표
지원 필요성 (20)	■ 대상 품목 지원의 필요성
적합성 (50)	■ 신청분야 및 대상업종의 적합성 ■ 대상 품목의 산업 연관성 및 시험/인증 항목 타당성
파급 효과 (30)	■ 제품 시험/인증을 통한 효과 ■ 발생 성과로 인한 기업 성장 가능성

□ 지원제외 대상

- 신청 업체의 사업분야 및 대상 제품이 공고된 사업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지원기업 및 지원기업의 대표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접수 및 평가일 기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
정관리, 화의를 받은 기업인 경우

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서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,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(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)
-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- 신청서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등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으며, 신청서, 구비서류에 대해 수정 및 보완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
-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에 의거해 법위반 사실 확인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: 적용법률

↳ (공정) ❶ 공정거래법, ❷ 하도급법, ❸ 표시광고법

↳ (노동) ❹ 근로기준법, ❺ 산업안전보건법

↳ (환경) ❻ 폐기물관리법, ❼ 대기환경보전법, ❽ 소음진동관리법, ❾ 물환경보전법

↳ (납세) ❿ 국세기본법, ⓫ 지방세기본법

※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“[별첨]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” 참고

경기도 고시 제2025-23호

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

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「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. 1. 17.
경 기 도 지 사

1. 추진목적 :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1. 적용대상 :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
 - (도내 기업)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, 영업소,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
1. 적용사업 : 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,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
 - 가.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 될 수 있음
 - 나. 사업유형별 조례 적용 제외사업
 - 1) (계도·개선사업)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
 - 2) (사업운영비·소액사업)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, 소액·다수기업 지원사업
 - 3) (비경쟁사업)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
 - 4) (자금·융자지원 사업)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
 - 5) (시·군 보조(매칭) 사업)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른 시군 지원사업
 - 6) (소상공인 지원 사업)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
 - 7) (투자유치 사업)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(인센티브) 사업
4. 위반사실 적용법률 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 - 가. 적용법률
 - 1) (공정)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
 - 2) (노동)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
 - 3) (환경)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
 - 4) (납세)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
 - 나.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(사업별) 특성에 따라 지침·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
5. 위반사실 조회기간 : 사업 공모일(모집일) 기준 2년 이내
 - 가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 - 나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·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
6. 사업참여 제한조건 : 법 위반 사실 확인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 - 가.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[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(서식2) 내용과 상이]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 - 나.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(사업별)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7. 법위반사실 확인 :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
 - 가. (공정)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
 - 나. (노동)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
 - 다. (환경) 기업 소재지 관할 시·군 조회

라. (납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

8. 이의 및 구제신청 : 법 위반 사실로 제한 기준 적용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 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(서식3) 제출

가. 사업자선정위원회 등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사업자 선정 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

※ 기업의 권리구제,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
나. 삭제

9. 제출서류 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서식1), 기업의 범위반사실(부존재) 여부 확인서(서식2)

10. 고시 효력일 : 고시일 ~ 차기 고시일 전까지

11. 문의처 :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(☎031-8030-2992, -2995)

붙임 1. (서식1)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2. (서식2) 기업의 범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인서